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China Knowledge Network)**  
논문투고규정

## I. 투고 규정

### 1. 논문 투고 요건

- 가. 『중국지식네트워크』는 중국에 관한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 학술논문(어학분야는 불포함)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을 게재한다.
- 나. 투고한 논문은 표절을 포함한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가 예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행 시기

- 가. 본 학술지는 5월 31일, 11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 나. 원고는 3월 15일과 9월 15일까지 온라인투고 시스템(<https://circ.jams.or.kr/>)으로 접수한다.

### 3. 작성 언어

- 가. 한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어와 영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나. 논문 첫머리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논문 말미의 요약문은 한국어 논문일 경우는 영어 또는 중국어 요약문, 영어 논문일 경우는 영어 또는 중국어 요약문, 중국어 논문일 경우는 중국어 또는 영어 요약문을 작성한다.

### 4. 원고 분량

- 가. 200자 원고지 120이상 150매 이내로 한다.
- 나.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 5. 논문 접수와 심사

- 가. 논문의 투고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의 <https://circ.jams.or.kr/>에서 회원 신청을 한 후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 나. 투고논문은 『중국지식네트워크』 스타일 파일에 맞춰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 다. 투고된 원고는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저작권

- 가.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 귀속됨을 동의하여야 한다.
- 나. 본 연구소는 게재된 논문을 저널 DB를 통해 대내외로 공개할 수 있다.

### 7. 저자 정보의 표시와 관리

- 가. 논문 투고 시 논문 저자(공동 및 교신 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나.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논문 속 저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II. 원고 작성

1. 논문구성: 제목→목차→국문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중문)초록 순으로 배열한다.

### 2. 논문 스타일

구분	글자모양	글자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제목	신명조	17		
이름		10.5		
장제목 1.		13		
절제목 1.		11		
소제목 1)		10.8		
본문		10.8	10	
각주		9.4		16
인용문		10		
참고문헌		10		15.5
표	중고딕	8.8		

  

용지크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신국판 (152/225)	19.5	22.5	24	24	12

### 3. 본문의 인용표기

가. 문헌 인용은 본문의 내주(예: 홍길동, 2020: 31-42)를 원칙으로 한다.

나. 설명이 불가피할 경우 각주에 간략히 작성한다(각주의 인용표기는 내주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

다. 내주의 인용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재인용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단독 저술 또는 논문: (홍길동, 2020: 31-42), 왕지쓰(王緝思, 2014: 185), 아렌트(Arendt, 1958: 98)
- 2) 2인 공저: (홍길동·장길산, 1986: 31), (王緝思·朱鵬, 2012: 185), (Keohane and Nye, 2000: 104)
- 3) 3인 이상의 공저: (홍길동 외, 1990: 178), (王緝思 外, 2010: 26), (Arendt et al., 1963: 253)
- 4) 복수의 문헌 동시 인용: (홍길동, 1990: 178; 王緝思, 2014: 185; Arendt, 1958: 98)
- 5) 신문·잡지: (『교수신문』 2015.10.07.), (『人民日報』 2020.01.10.), (New York Times 2015.10.07.)
- 6) 인터넷 검색 문헌(저자): 저자가 명시되어 있는 문헌의 경우는 본문 인용표기와 동일
- 7) 인터넷 검색 문헌(無저자): 각주에 인용 표기(예, <http://www.bbc.com> 검색일: 2007.08.10)

### 4. 한자와 외국어 표기

가. 본문 속의 한자표기: 첫 번째에 한해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사회주의(社會主義)

나. 외국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국어의 경우, 현급 시(市) 이상의 지명과, 한자어의 의미가 분명한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은 그 일부분 혹은 전체를 한문독음으로 쓸 수 있다. 예) 북경시(혹은 베이징시), 북주시, 중국석유공사, 텡페이(騰飛)과기유한공사. 이상과 같은 외국 고유명사는 첫 번째에 한해서 한글 표기 뒤 괄호 속에 전문을 원어로 부기한다. 예) 텡페이과기유한공사(騰飛科技有限公司).

## 5. 그림과 표

가. <표 1>, <그림 1> 형식으로 표기

나. 출처는 해당 그림, 표 아래 인용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

## Ⅲ. 참고문헌 작성 방식

### 1. 참고문헌 순서

가. 국내 문헌, 외국 문헌(동양 문헌, 서양 문헌), 일간지와 온라인 자료 순서로 정리한다.

나.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서로, 동양 문헌은 집필자 성의 원음(原音) 가나다 순서, 서양문헌은 집필자 성(last name)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 2. 참고문헌 표기

가. 한국, 중국, 일본 문헌 중 논문인 경우는 활낫표(「」), 단행본 및 잡지/일간지명의 경우는 겹낫표(『』)로 표기한다.

나. 서양문헌(영문 또는 유럽어 문헌) 중 논문인 경우는 큰따옴표(“ ”), 단행본 및 저널/일간지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1) 저서 및 역서

(1) 허균, 2020, 『홍길동전』, 서울: 국민대출판부.

(2) Penrose, E.,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Oxford: Basil Blackwell.

(3) 王缉思, 2014, 『释疑：走出中美困局』,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4)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2001, 『공간의 생산』, 서울: 예코리브르.

#### 2) 정기간행물

(1) 장길산, 2020, 「홍길동전 분석」, 『한국문학연구』, 제1권.

(2) Keohane, R. O., & Nye Jr, J. S., 1973. "Power and interdependence," *Survival*, 15(4).

(3) 王缉思, 2014, 「大力推动对印度洋地区的战略研究」, 『印度洋经济体研究』, 第1期.

#### 3) 일간지와 인터넷 자료

(1) 홍길동, 「장길산을 읽고」, 『교수신문』, 2020.12.12.

(2) 이광수, 「중국의 ‘문화공정’ 연구의 지역별 분포」(2022.05.25), <https://circ.kookmin.ac.kr/xe2010/knowledgemap/13206539>(검색일: 2022.10.07)

(3) Lehman, M. A. and Brown, R. H., "An Early Fragment from Central Nepal,"(2020) <http://www.ingress.com/~astanart/pritzker/pritzker.html>(검색일: 2006.05.12)

(4)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疫情联防联控机制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关于印发加强当前农村地区新型冠状病毒感染疫情防控工作方案的通知", 2022年 12月 30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12/31/content\\_5734418.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12/31/content_5734418.htm)(검색일: 2022.12.31)

##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